

문서번호 (결재일자)	정책기획팀-2222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(645)호

선임	정책기획팀장	기획본부장	대표이사
09/26 박연수	09/26 이소미	09/27 최구환	09/27 이경돈
협 조	디자인행정관 09/27 한문철		

도·강·매·력
특별시서울

「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안

2022. 9.

기획본부
(정책기획팀)

「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」 일부개정정관(안)

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이사, 당연직감사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·지침 반영 현행화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.

I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및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 이사, 감사 변경사항 반영 필요
- 조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현행화
 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임원)
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육성)

II 주요 내용

- 당연직 임원 직책명 개정(제9조)
 - 개정사유: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반영
(‘22. 8. 19일자 서울시 조직개편)
 - 개정내용
 - 당연직 이사: (기존) 문화본부장 → (변경) 디자인정책관
 - 당연직 감사: (기존) 디자인정책과장 → (변경) 디자인정책담당관

현행	개정안
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	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

현 행	개정안
② 삭제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<u>문화본부장</u> 2. 삭제 3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<u>디자인정책과장</u> 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⑤ ~ ⑥ (생략)	② 삭제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<u>디자인정책관</u> 2. 삭제 3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<u>디자인정책담당관</u> 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□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(제10조)

- 개정사유: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 반영
- 개정내용: 연임 단위기간 변경(서울시 출연기관 공통사항)

현 행	개정안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 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3년</u>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 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1년</u>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□ 기금 가능재원 관련 조항 개정(제34조)

- 개정사유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일부개정 반영
- 개정내용: 문화예술진흥법 해당 조항 번호 개정

현 행	개정안
제34조(기금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4조(기금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현 행	개정안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. 중앙정부 지원금 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 4. (생략)	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. 중앙정부 지원금 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6항에 따른 기부금 4. (현행과 같음)

I 참고사항

○ 제안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○ 절 차

- 서울시의회 사전보고 완료('22. 9. 21.)
- 이사회 상정 및 시장승인 예정

○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, 「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」 전문 별첨

별지 1. 신·구조문 대비표

붙임 1.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전문 1부. 끝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<u>문화본부장</u></p> <p>2. 삭제</p> <p>3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</p> <p>④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<u>디자인정책과장</u>을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<u>디자인정책관</u></p> <p>2. 삭제</p> <p>3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</p> <p>④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<u>디자인정책담당관</u>을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3년</u>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1년</u>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기금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</p> <p>2. 중앙정부 지원금</p> <p>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<u>제7조제5항</u>에 따른 기부금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4조(기금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</p> <p>2. 중앙정부 지원금</p> <p>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<u>제7조제6항</u>에 따른 기부금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2022. X. XX.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정관은 2022년 X월 XX일부터 시행한다.</p>